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백혜련·정성호·윤종군

백승아 · 염태영 · 김한규

박희승 • 이병진 • 김영진

이재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.

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(老幼者)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 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56조제3항 중 "제21조의2제2항"을 "제21조의2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소방자동차 전용구역	제21조의2(소방자동차 전용구역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
	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1호
	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노유자시설의
	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
	권고할 수 있다.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・방	<u>4</u>
법, <u>제2항</u> 에 따른 방해행위의	<u>제3항</u>
기준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5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56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	③ 제21조의2제3항
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	
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	
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	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	
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